



Web Contents



2026년 03월 14일 21시 43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사업

- 사업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6세미만)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추진절차

1. 영유아 검진 실시 → 검진결과통보서에 '심화평가권고'체크, 정밀검사 안내 및 검사 실시(의료기관)
2.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유아 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 계좌 지급(보건소)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주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1차	생후 14일	검진일 기준 생후 14일부터 35일
2차	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차	9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4차	1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5차	3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6차	4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7차	5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8차	6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각이상 (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 (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
	몸무게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 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 (과잉)	○	○	○	○	○	○	○	○	○
	수면	영아돌연 사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 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 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발 달			○	○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 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 증				○	○	○	○		
	치아검사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공단에서송부한검진 안내문(검진표 포함)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 **관내 검진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그린소아청소년과의원	목포시 청호로 154	278-8883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03	280-7221
목포미즈아이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418	260-8058
목포시의료원	목포시 이로로 18	260-6551
목포아동병원	목포시 옥암로 149	801-8000
목포예향병원	목포시 삼학로223번길 38	245-0575
목포한국병원	목포시 영산로 483	270-5300
목포하이라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25	280-5511

목포시 800	목포시 고하대로 333	200-3344
목포현대병원	목포시 용당로 322-1	272-7551
솔트병원	목포시 고하대로 724	272-7575
응해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목포시 응해지구로 12	279-0366
목포중앙병원	목포시 영산로 623	280-3128
세안종합병원	목포시 고하대로 795-2	260-6600

※ 검진기관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선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